

춘천지방법원 2024. 11. 8 선고 2024가단331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, C

피 고 D

변 론 종 결 2024. 10. 11.

판 결 선 고 2024. 11. 8.

주 문

-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4. 1. 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- 피고는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2024. 1. 9. 접수 제7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유승원

별지